

·産·學의 各 構成員 間의 衡平을 맞춰 15人 이내에서 20人 이내로 調整하는 것은 妥當한 案이라고 判斷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 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運營에關한條例 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서울의 姊妹 友好都市 및 其他 主要都市에 서울館을 設置 하여 海外 主要都市와 交流協力支援, 情報蒐 集, 中小企業의 海外進出支援 및 서울市政弘 報 등의 機能을 遂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바, 地方自治法 第15 條 및 서울館設置推進計劃 市長方針 第1473 號(94.7.26)에 根據하여 서울의 姊妹友好都市 와 海外 主要都市에 서울館을 設置하여 國際 協力活動 據點基地를 確保하고, 서울의 國際 競爭力 提高를 위한 것은 매우 妥當한 案이 라고 判斷되나, 條例의 體系 및 內容上 서 울館이라는 名稱이 對象都市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표시되어 條例案에서 規定한 서울館 만을 고집할 경우 條例制定의 實效性이 의문 시되므로 用語의 正義를 新設하고, 其他 條 例上 不合理한 用語 및 자구를 修正하여 原 案에 대하여 修正可決하였습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執 行部側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토대로 關聯 法規와 條例를 면밀히 研究하고 深度 있는 質疑와 答辯을 통하여 신중한 審 査를 한 結果,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 例中改正條例案은 全般的으로 必要성과 合理性 이 있다고 判斷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고,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運營에關한條例案은 修正 可決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配付하여 드린 審査報 告書에 의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本議員이 一括 報告드린 대로 可決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白昌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文化教育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

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 特別市서울館設置·運營에關한條例案을 議決하고 자 합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이상 2件이 各各 可決되었 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제화”를 “세계화”로 한다.

제1조중 “국제화의”를 “세계화의”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세계화추진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2호, 제5호 및 제6호중 “국제화”를 “세계화”로 한다.

제3조제1항중 “15인 이내의”를 “20인 이내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 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 하는 서울관(이하 “서울관”이라 한다)의 설 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관이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 | |
|---|--|
| <p>이라 한다)이 별도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안 제2조 내지 안 제5조를 각각 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로 하고, 안 제3조제6호중 “기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를 “기타 시장이”로 한다.</p> | <p>②서울관 근무를 위하여 파견될 자의 파견 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복무규정의 예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서울관(이하 “서울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관이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해외주요도시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제 3 조(기능) 서울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지원 2. 해외도시의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제공 3.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서울특별시에 둔 중소기업체 등의 상품전시·홍보 등 해외 진출지원 4. 무역·투자의 알선 및 상담 5. 서울시정·문화 및 관광의 해외홍보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p>제 4 조(대상도시) 서울관은 서울특별시의 자매우호도시 및 기타 외국도시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도시에 설치할 수 있다.</p> <p>제 5 조(설치·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서울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p> <p>제 6 조(근무자 파견) ①시장은 서울관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p> | <p>11. 서울特別市住居環境改善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55分)</p> <p>○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11項 서울特別市住居環境改善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議事棒 3打)</p> <p>都市整備委員會 金孝善議員님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金孝善議員 都市整備委員會 所屬 金孝善議員입니다.</p> <p>本議員이 이번 우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한 서울特別市住居環境改善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p> <p>금번 市長이 提出한 서울特別市住居環境改善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의 主要要旨는 95年 1月에 都市 低所得市民의 住居環境改善을 위한 臨時措置法이 改正되어 그 內容을 條例에 반영하면서, 그 동안 本 條例의 運營過程에서 나타난 現實과 不合理한 점을 補完하여 住居環境改善事業을 活性化하고자 하는 것으로, 改正하고자 하는 主要骨子는 첫째, 住居環境改善事業에 따라 建築物를 改良할 時 道路幅이 2m 미만인 경우 2m 이상을 確保토록 하여 步行者 通行과 이삿짐 등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p> <p>둘째, 世帶 當 60㎡ 이하의 共同住宅을 建設할 경우 日照等 確保를 위한 이격거리 적용을 배제하여 住居環境改善事業 趣旨에 맞게 小規模 筆地의 住宅改良이 活性化되도록 하면서,</p> <p>셋째, 建築物 延面積과 300㎡ 이상의 共同住宅을 建設할 경우 서울시 停車場設置基準인</p> |